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관련 FAQ

2015년 11월 23일

1. 사채권자집회 관련

□ 사채권자집회는 어떻게 통과되나?

-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 3분의2 이상과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출석이 3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불가능합니다.

□ 법원 인가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 최단 4일, 한달 이상 걸린 경우도 있어서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통과되면 최대한 신속히 법원인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안건에 반대한 채권자들에게도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이 미치는가?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미칩니다(상법 제498조 제2항). 따라서 안건에 반대한 사채권자들도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구속됩니다.

□ 공고된 의안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가?

- 무기명식 사채의 사채권자집회의 경우 사채권자집회일 3주 전 그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상법 제491조의2 제2항), 공고 이후로는 의안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탁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상법상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일로부터 1주일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92조 제2항). 따라서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채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 공탁서와 요구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채권자의 의무는 없는가?

- 공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사채권자집회 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사채권자집회 결의 이후 10% 원금 상환, 출자전환 신주, 전환사채 등을 받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집회 결의 이후 회사가 별도로 공고하는 사채등록필증 원본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6년 12월 19일까지 만기연장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기존 사채권의 권리가 변경되므로 사채권자는 더 이상 기존 사채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 확정 직후 진행되는 절차에 참여하여 10%의 원금을 상환받고 나머지를 신주와 전환사채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혹시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 확정 직후 진행될 위 절차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년 후 한번 더 사채권 신고 및 10% 원금상환 및 신주 혹은 전환사채 교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위하여 2016년 12월 19일까지는 사채권자의 10% 원금상환 및 신주 혹은 전환사채 교부를 위한 권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2016년 12월 19일까지 만기연장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2. 원리금 지급 관련

- 원금 10%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 확정 이후 사채권 신고공고를 내고 2주 정도 신청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 명의로 명의 변경이 완료된 사채등록필증 원본 등의 서류를 징구하고 사채권자의 계좌를 등록한 뒤, 신청기간 종료 뒤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사채권자가 등록한 계좌로 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15. 12. 19.까지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수령하는가?
 -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 확정 이후, 위 원금 10% 상환을 위하여 등록된 계좌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15. 12. 19.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은 보장이 되는가?
 - 사채권자집회 안건의 만기보장수익률 관련 조항의 효력 상실 문구는 2015. 12. 19. 이후의 만기보장수익률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

한다는 의미입니다. 2015. 12. 19.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사채권 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 확정 이후, 위 원금 10% 상환을 위하여 등록된 계좌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향후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채권 신고 당시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채권 전부가 출자전환 또는 전환사채 차환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는 새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출자전환과 전환사채 차환발행에 응하지 않으면 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기존의 사채권은 원금 10%를 받을 권리와 함께 나머지를 주식과 전환사채로 수령할 권리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출자전환과 전환사채 발행에 응하지 않더라도 10% 이상의 원금을 상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 별도로 사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이자와 만기보장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가?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기존의 사채권의 권리는 변경되어 기존 방식대로 이자와 만기보장수익률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15. 12. 19.까지 발생한 이자 및 만기보장수익률과 2015. 12. 19. 이후의 이자는 사채권 신고 당시 등록된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사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보장수익률과 발생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 수령을 선택하시는 경우 새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이자(연 3%)가 지급됩니다.

3. 출자전환 관련

□ 출자전환 예상 시기는?

-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 확정 이후 사채권 신고 공고를 내고 2주 정도 신청을 받아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발행 물량을 확정된 뒤 이사회 결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사회 결의로부터 실제 주식과 전환사채가 발행되기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신고서 심사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후 실제 출자전환/전환사채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출자전환/전환사채 비율 선택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당 물량에 대한 발행을 결정하면 통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절차와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 절차를 밟아서 발행 예정입니다.
- 출자전환/전환사채발행 선택 기회를 놓친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
 - 1년 정도 경과한 후 다시 출자전환/전환사채 발행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 출자전환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할인율(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을 적용하여 발행할 예정입니다.
- 출자전환 이후 즉시 처분이 가능한가?
 - 만약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체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서 6개월 간 처분이 제한되나 최대주주 변경이 없는 경우 출자전환 이후 바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전환사채 차환발행 관련

- 전환사채 발행 예상시기는?
 - 위 출자전환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할인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90%)을 적용할 예정이고,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조정 조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 전환사채 발행 이후 즉시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 후 1년 간은 전환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전환사채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End of Document-